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	배포일자	2022년 7월 12일(화) 총 5매	
담당부서 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생활보장팀장 신유선 ☎440-2931 • 담당자 박 진, 이경준 ☎440-2932,4	
사진(이미지)	▣ 없음 ☐ 있음	참고자료	☐ 없음 ▣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!

- 인천형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·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-

- 기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「시민 안심 복지사업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.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,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.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2% 증가했고,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백 건으로 13%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이에 따라,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「SOS 긴급복지」

와 「디딤돌 안정소득」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.

먼저, 「SOS 긴급복지」는 주 소득원의 실직, 질병,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.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,900원,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,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,200원 이내를 지원하고,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.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 8,800만원 이하였으나, 이번에 3억 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.

「디딤돌 안정소득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.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,160원을 지원하고, 출산 시 70만원,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.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% 이하였으나, 이번에 50%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.

< 인천시 시민 안심복지사업 개요 및 선정기준 완화 >

『SOS긴급복지 지원』	『디딤돌 안정소득 지원』
o 대 상 : 위기사유 발생 가구 -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o 선정기준 - (소득기준) : 기준 중위소득 **85% 이하** - (재산기준) : ~~1억8천8백만원 이하~~ → **3억원 이하** - (금융재산) : 1천만원 이하	o 대 상 :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 선정기준 - (소득기준) : 기준 중위소득 ~~40%이하~~ → **50% 이하** - (재산기준) : 1억3천5백만원 이하 / (금융) 3천만원 이하 - (부양의무자) : 고소득(연1억) 또는 고재산(9억) 이하 o 사적 이전소득 : 미적용

「SOS 긴급복지」와 「디딤돌 안정소득」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, 현수막, 카드뉴스 등 온·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,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동(洞)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·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“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> 1. SOS 긴급복지 개요
2. 디딤돌 안정소득 개요

참고1 SOS 긴급복지 개요

□ **지원대상 :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② 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기준과 ③ 기타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**

※「긴급복지」지원 종료 시점 6개월 경과후 동일사유로「인천형 긴급복지」지원 가능

□ **위기 사유** (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,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 시행규칙 제1조의 2)

1. 주소득자의 **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** 등으로 **소득을 상실**한 경우
2. 중한 **질병 또는 부상**을 당한 경우
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**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** 등을 당한 경우
4. **가정폭력** 또는 **성폭력**을 당한 경우
5. **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**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6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**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**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**실직**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8.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**지자체 조례**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-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체납 등
9. 그 밖에 **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**하는 경우

① 주소득자와의 **이혼**, ② **단전**된 때, ③ 교정시설 **출소자** 생계 곤란, ④ 가족으로부터 **방임·유기**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**노숙**을 하는 경우, ⑤ **사각지대발굴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**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, ⑥ (한시) **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**한 경우, ⑦ (한시) **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**한 경우

□ **소득·재산기준**

○ (소득)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(단위 : 원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당초 (85% 이하)	1,653,090	2,771,072	3,565,496	**4,352,918**	5,120,838	5,870,953

○ (재산) ~~1억 8,800만원~~ ⇒ **3억원**

○ (금융재산) 1,000만원 *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% 반영

○ (재지원 제한) 2년 이내 →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

□ **지원내용** **※ 최대지원 횟수는 긴급복지(정부형)와 동일**

종 류			지원내용	지원금액
금전·현물 지원	위기상황 주급여	생계	○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304천원 (4인기준)
		의료	○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)	300만원이내
		주거	○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	643.2천원 이내 (4인기준)
	부가 급여	교육	○ 초·중·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	초 124.1천원/중 174.7천원/고 207.7천원 및 수업료· 입학금
		그밖의 지원	○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-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: 106천원/월 - 해산비(70만원)·장제비(80만원)·전기요금(50만원이내) : 각 1회	

참고2 디딤돌 안정소득제도 개요

□ 사업기간 : 연중(소득평가액 확대는 2022.7.1.부터)

□ 지원대상 :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 가구

*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(SOS긴급복지 포함)생계지원 대상자 제외

□ 선정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, 재산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

○ (소득평가액) 중위소득 ~~40% 이하~~ ⇒ 50% 이하 가구

(단위: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 (2022년)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
선정기준 (중위50%이하)	972,406	1,630,043	2,097,351	2,560,540	3,012,258	3,453,502

○ (재 산)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

* 선정제외 :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, 100%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

○ (부양의무자) 고소득(연1억, 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

□ 지원내용 :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, 해산·장제급여

○ (생계급여)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%(정액지원)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현금급여	291,722	489,013	629,205	768,162	903,678	1,036,051

○ (해산·장제급여) 출산시 70만원, 사망시 80만원